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//www.mke.go.kr
2012년 5월 2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전략물자관리팀 박병찬 팀장(2110-5326), 박재홍 사무관(2110-5343)	

전략물자 불법수출 기업 자진신고 유도

- 對 국민 전략물자관리제도 홍보 및 기업의 자유로운 무역활동 보장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등 유관기관(원자력안전위원회, 관세청, 방위사업청)과 공동으로 **『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』**을 운영할 계획임.

○ 금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과거 전략물자 인식률이 낮았던 시기에 이루어졌던 非의도적 불법수출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무역활동 보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임

□ **신고기간**은 5.21~10.21까지 5개월간 운영하며, **신고대상**은 **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한 기업임.**

○ 자진신고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(www.yestrade.go.kr)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팩스(02-6000-6420)로도 신고가 가능함.

※ 문의 : 전략물자관리원 불법수출신고센터(02-6000-6490~5)

□ 금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수출을 신고한 기업에게는 별도의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등 **완화된 행정처분을 적용**할 예정이며, 교육명령 조치가 취해진 기업에 대해서는 **교육 우선 신청권**을 부여하고, 전략물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관리체제 구축(CP)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임.

□ 아울러, 지식경제부는 **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** 유관기관과 함께 **특별단속을 실시**하여, **적발 기업에 대하여는 가중처분할 방침**인 바, 금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기업들이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음.

< 붙임 : 공고문 및 자진신고 서식 >

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-241호

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공고

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와 그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들 무기의 제조·개발·사용 등에 전용 가능한 품목(기술·물자 S/W)을 말하며 그 범위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산업용 물품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.

지난해 수출된 주요품목과 전략물자와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,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출시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수출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

전략물자 불법수출 기업은 대외무역법에 의거,
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 이내의 벌금 및 3년 이내의 전략물자 무역금지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다.

그러나,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수출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부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수출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('12.5~10)을 설정하고, 그 기간 중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므로, 자진신고 대상 해당 기업은 동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고기간 : 2012년 5월 21일부터 2012년 10월 21일

2. 신고대상 : 전략물자 또는 이에 준하는 품목 수출기업 중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품목 수출 기업

3. 신고방법

가. 신고장소 : 전략물자관리원

- 온라인(원칙) 또는 팩스(예외) 접수

* 문의 : 전략물자관리원(02-6000-6490~9495)

나. 신고서류 : 별지서식 및 구비서류(전략물자 사전판정서)

* 전략물자 판정 문의 : 전략물자관리원(02-6000-6441~6, 6451~6)

4. 신고자 혜택

가. 행정처분 경감 : 기존의 불법수출행위 업무처리 내부지침과 별도의 경감 기준 마련 적용

나. CP 기업 구축 지원 : 교육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 기업에 한해 교육 우선 신청권과 CP체제 구축 우선 지원

* 단, 기간 내 미 신고기업에 대하여는 국정원, 해경 등과 연계, 특별단속 기간을 두어 적발 기업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 실시

5. 신고기간 종료 후 조치

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, 적발시 가중처벌 등 처분 강화

2012년 5월 21일

지식경제부장관 /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/
관세청장 / 방위사업청장

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서

처리기간 : 15일 (사전판정서를 첨부할 경우 즉시)

신고인	①기 업 명			
	②사업자등록번호		③법인등록번호	
	④성 명(대표자)			
	⑤주 소		(전화 :)	
	⑥사업장소재지		(전화 :)	
신고내용	⑦품목명(상품명)		⑧HS번호	
			⑨CAS 번호 *화학물질일 경우 기재	
	⑩단가		⑪수량	
	⑫금액		⑬수입자 (상호 또는 명칭)	
	⑭수출국	*복수일 경우 모두 기재	⑮수출시기	YYYY.MM
⑯전략물자 해당여부			□해당 □비해당 *전략물자 사전판정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전략물자 해당일 경우 해당에 표기	
⑰상황허가 대상품목 여부 *상기 ⑯번 비해당에 표기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 2에 의거한 상황허가 대상품목여부를 표기			□예 □아니오	

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상기 품목에 대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 고 인 (서명 또는 인)

지식경제부장관 귀하

※ 구비서류

전략물자 사전판정서 1부

※ 신고하고자 하는 품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작성 후 신고 요망